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 가. 관세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그리고
  - 2) 조지아의 경우, 재무부의 국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 나. 관세법 및 규정이란 상품의 수입, 수출, 이동 또는 보관, 관세 당국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운영 및 집행, 그리고 그 법적 권한에 따라 관세 당국이 제정한 모든 규제에 관한 법적이고 규제적인 규정을 말한다.
- 다. 통관 절차란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 수단에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 라. 특송화물이란 상품의 신속한 국경 간 이동을 위하여 운송 업무를 운영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관세 당국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의하여 또는 그 기업을 통하여 수입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 마. 상품이란 재료, 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그리고

- 바. 운송수단이란 자연인 또는 상품을 운송하여 당사국의 관세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관세 영역에서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차량 및 항공기를 말한다.

#### 제4.2조 적용범위 및 목적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 및 각 당사국의 관세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관세 영역에서 나가는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각 당사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적용에서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 나. 각 당사국의 통관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증진하는 것
  - 다. 각 당사국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 라.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 마. 세계 및 역내 공급망을 위한 환경 강화 등을 통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는 것

#### 제4.3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상으로 인터넷에 공표하며, 가능한 한도에서 그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 가. 법, 규정과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항구, 공항 및 그 밖의 반입지점 절차를 포함 한다), 그리고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 나. 수입 또는 수출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조세의 실행세율
- 다. 정부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수입, 수출 또는 통과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
- 라. 통관 목적상 생산품의 품목분류 또는 평가에 관한 규칙
- 마.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법,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절차
- 바.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위하여 보유한 법, 규정 및 모든 절차
- 사. 관세 사안에 대하여 관세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 아. 문의처에 연락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정보, 그리고
- 자. 관세 할당의 운영과 관련된 절차

2. 가능한 한도에서, 새로운 관세법 및 규정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정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제안된 새로운 또는 개정된 관세법 및 규정을 공표하거나 달리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제안된 관세법 및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그러한 사전 공고가 배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자국의 법, 규정 및 법적 체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통과 중인 상품을 포함하여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과 규정이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발효일 전에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되거나 그에 대한 정보가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한다.

#### **제4.4조**

##### **일관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이 자국의 관세 영역에 걸쳐 일관되게 이행되고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이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은 제4.14조의 협의 절차에 따라 그 사안에 대하여 그 당사국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5조**

##### **문의처**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문의에 답변하고 수입, 수출 및 통과에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한다.

#### **제4.6조**

#####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요청을 제출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정당한 사유를 가진 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음에 대하여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

나.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다.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관세평가,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사안

2.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하기 위한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사전심사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명시하는 절차

나. 각 당사국이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경우 상품의 견본을 포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언제라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사전심사결정이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과 상황, 그리고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에 기초하도록 보장하는 절차, 그리고

라. 사전심사결정이 그 결정에 대한 관련 사실과 근거를 포함하도록 보장하는 절차

3. 각 당사국은 모든 필요한 정보의 접수 시 90일 내에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한다.

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이 발급된 날부터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더 늦은 날에 유효하게 되고, 사전심사결정이 변경, 철회 또는 무효화되지 않는 한 3년 이상 동안 유효함을 규정한다.

5. 다음의 경우에 당사국이 사전심사결정을 철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결정에 대한 관련 사실과 근거를 적시한 서면 통지를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가. 자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 규칙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거나 관련 정보가 보류된 경우

다. 사전심사결정의 기초가 되었던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라. 사전심사결정이 잘못된 경우

6.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관세 당국 또는 그 밖의 정부 기관의 검증 중에 있거나 통관사후심사 또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사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결정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상황과 근거를 적시하여 사전심사결정을 신청한 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7. 그 당사국이 발급한 사전심사결정은 자국의 영역에서 그것이 발급된 그 인에게만 구속력을 가진다.

8. 각 당사국은 상업적 비밀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국이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제4.7조

###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반출을 위한 당사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에게 상품의 반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 가.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 나. 상품이 도착하는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하는 절차
  -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 라. 적용 가능한 관세,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 관세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자국 관세당국이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관세, 조세 및 수수료의 지급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상품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하여 선별된 경우, 그러한 검사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제한되며, 과도한 지체 없이 행해지고 완료된다.

4.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자국의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의도된 상품이 그 당사국 영역으로의 반입 지점부터 상품이 반출되도록 의도된 자국 영역의 다른 세관까지 세관 통제 하에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가능한 규제 요건이 충족되어어야 한다.

5. 부패성 상품의 피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한정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세관 통제로부터 부패성 상품의 반출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상품이 도착하고 반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한 후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가급적 가장 빠른 시간에, 그리고

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국의 관세 당국의 업무 시간 외

6. 각 당사국은 요구될 수 있는 어떠한 검사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7. 각 당사국은 반출을 기다리는 동안 부패성 상품의 적절한 저장 시설을 마련하거나 수입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마련한 모든 저장 시설에 대하여 자국의 관련 당국이 승인 또는 지정하였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을 이동시키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포함하여, 그러한 저장 시설로의 상품의 이동은, 요구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하고 국내 법률에 합치되는 경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저장 시설에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다.

8.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몰수 또는 처리하는 그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8조**  
**특송화물**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세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 가.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규정한다.
  -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 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
  - 라.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 마.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특송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가 제출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특송화물이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 바.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 가액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 사.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국가 법률에 따라 규정된 일정한 금액의 가치를 가진 특송화물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공식적인 반입서류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간소화된다.
2. 제1항사호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한 상품의 경우, 당사국은 공식적인 반입서류, 관세 또는 조세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9조 정보기술의 적용

1.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신속한 통관과 반출을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기초하여 통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위험관리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적된 상품 도착 전 자료의 제출을 포함하여 그 상품의 반출을 위한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사용한다.
3. 당사국은 자국의 무역행정문서를 대중이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4.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태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5. 종이 없는 무역행정의 이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 개발 시, 당사국은 국제기구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국제 표준 또는 방식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6. 한쪽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의 수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협력한다.

## 제4.10조 위험관리

1. 당사국은 세관 통제를 위하여 위험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당사국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위험관리를 설계하고 적용한다.

3. 당사국은 세관 통제 및 가능한 한도에서 그 밖의 관련 국경 통제를 고위험 탁송물에 집중하고, 저위험 탁송물의 반출을 신속화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위험관리의 일부로 그러한 통제를 위한 탁송물을 무작위로 선별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위험관리를 적절한 선별 기준을 통한 위험 평가에 기초한다. 그러한 선별 기준은 특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부호, 상품의 성격 및 상품명, 원산지 국가, 상품이 선적된 국가, 상품의 가격, 무역업자의 준수 기록 그리고 운송 수단의 유형을 포함할 수 있다.

#### 제4.11조 통관사후심사

각 당사국은 무역업자에게 효율적인 통관사후심사의 적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통관사후심사의 적용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건 또는 부담을 무역업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 제4.12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관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인이 다음에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 가.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이나 부서보다 높거나 그로부터 독립된 행정 당국에 의한 행정적 재심사, 그리고
  -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

2. 당사국은 자국의 불복청구 및 재심사 절차가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3. 당사국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수행하는 당국이 그 재심사의 판정 또는 결정과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이유를 그 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보장한다.
4.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사를 실시하는 당사국에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당사국이 제4.13조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제4.13조 비밀유지

1.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쪽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다른 쪽 당사국이 정보 요청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고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한 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2.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접수한 경우, 그 정보를 접수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자국의 국내법 및 법 제도에 따라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합치되게 행동하지 못했을 경우 그 당사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공개되면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관세법 행정에 따라 제출된 비밀 정보를 무단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절차를 채

택하거나 유지한다.

#### 제4.14조

##### 관세 협력

1. 양 당사국은 무역의 원활화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관세 사안에 대한 상호 행정 지원 협정의 체결을 환영한다.
2. 당사국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관세 사안에 대하여 그 사안에 대한 관련 세부사항을 제공하면서 언제라도 다른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각 연락처를 통하여 수행되고, 그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내에 개시한다.
3. 그러한 협의가 그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관세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0일 내에,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연락처를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그 연락 세부사항 및 그 밖의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통보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연락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 제4.15조

##### 관세 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 구성되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관세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양 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은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관세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관세 소위원회는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특히 그러한 장들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적절히 해결한다.
3. 관세 소위원회는 2년마다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